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및 제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송 창 선
책임연구원 이 재 경

요약본 목차

I. 서론 -----	1
1. NFT시장의 새로운 거래구조 및 그에 대한 연구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II. NFT의 의의 및 유형 -----	2
1. NFT의 등장 배경	
2. NFT의 개념	
3. NFT의 유형	
III. NFT 시장 및 거래 현황 조사 -----	8
1. 국내 사업체	
2. 해외 사업체	
IV. NFT 아트의 저작권법적 쟁점 -----	15
1. NFT의 소유권 인정 여부	
2.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물성	
3. NFT 거래의 추급권 기능과 권리소진의 원칙	
4.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침해 및 보호방안	
V. NFT 아트의 플랫폼 관련 쟁점 -----	20
1. NFT 플랫폼의 법적 지위	
2. NFT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	
VI. NFT 아트의 과세 쟁점 -----	25
1. NFT의 유형과 과세 쟁점 개관	
2. NFT 아트의 유형별 과세 검토	
VII. NFT와 ESG 관련 쟁점 -----	32
1. NFT와 환경	
2. 블록체인 및 NFT 업계에 부는 親ESG 바람	
3. NFT와 탈중양화	
VIII. 결론 -----	36
1. 본 연구의	
2. 본 연구의 기대효과	
3. 향후 전개 방향	

I. 서론

1. NFT시장의 새로운 거래구조 및 그에 대한 연구 필요성

- 국내외에서 NFT 시장 규모가 2020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IT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NFT를 포함한 각종 문화예술 아이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NFT 및 관련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됨.
- 수년간 국내외 매체에서 NFT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새롭게 등장한 현상인 만큼 아직 NFT의 기본 개념을 포함하여 NFT 아트에 대한 정의, 현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저작권 침해, 내부거래, ESG(환경) 등 문제에 노출되어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채 건강하지 못한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
- 특히, 2022년초 루나 사태를 포함하여 가상화폐시장의 불안정에 따라 국내외 NFT 시장도 흔들리는 상황을 겪으면서, 국내외 NFT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 및 각종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지식재산권 및 금융법 등 NFT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NFT 미술시장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및 주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창작자와 소비자, 유통업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NFT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2. 연구의 목표

- NFT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NFT 아트 거래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 국내외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NFT 등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에 따른 파장, 과세 행정상 준비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나아가 순기능과 부작용을 예측함
- 이와 함께, NFT 시장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정책 제안을 통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NFT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함

II. NFT의 의의 및 유형

1. NFT의 등장 배경

세계적인 영어사전 출판사 영국 콜린스가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을 정도로 2021년은 단연 NFT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각 토큰마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 토큰을 말한다. 토큰은 유형·무형 자산이나 디지털 정보를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토큰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다른 비트코인과 1대1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이다. 반면 NFT는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며, 블록체인 기술로 자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복제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출처, 발생시간 및 횟수, 소유자 내역과 기타 정보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품 인증서’와도 같은 기능 덕에 진위 여부나 소유권 입증에 중요한 미술품 같은 분야에 NFT 적용이 활발해졌다. 나아가 잭 도시의 최초의 트윗 캡처 파일 같이 예술품은 아니나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파일도 소장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¹⁾

NFT는 2015년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인 데브콘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최초의 NFT 서비스는 2년 뒤인 2017년에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를 통해 등장하였다. 최초의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한 이 게임은 고양이 키우는 게임인데, 다양한 고양이 캐릭터를 모으고 교배를 통해 희소성 있는 새끼를 키워서 시장에 판매하는 게임 특성상 대체가능 토큰이 도입될 수 없었다.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동일한 토큰으로 취급하면, 각 고양이의 가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크립토키티 개발사인 댕퍼랩스(DapperLabs)는 당시 막 형성된 토큰 발행 표준 ERC-721을 적용해 증서 방식의 토큰을 발행했다. 각기 다른 디지털 자산임을 인정하는 NFT 방식이 도입되면서 크립토키티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고, 이후 NFT는 디지털상에서 소유권을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미술품 시장, 커뮤니티,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나갔다.²⁾

1) 매일경제, NFT 광풍 부는데… “디지털 경제 만능열쇠” vs “옥석 가려야”, 2022. 1. 6.

2) 월간중앙, [문화 트렌드] NFT(대체 불가능한 암호화폐) 바람 타고 블루오션 뛰어드는 미술계, 2021.

2. NFT의 개념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 (Non Fungible Token)’의 약자이다. 반대말인 대체 가능 토큰 (Fungible Token)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같은 수량만큼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이다. 그러나 대체 불가능 토큰은 각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아 다른 토큰과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³⁾ NFT는 디지털 자산의 원본성, 진본성, 유일성을 증빙하며, 창작자 및 소유자 정보와 거래 내역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한다.⁴⁾ 그러나 NFT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NFT의 3가지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여 세분화해 분석해야 한다.

NFT의 3가지 구조는 ① NFT 콘텐츠 데이터 (Contents Data), ② NFT 메타데이터 (Metadata), ③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이다.⁵⁾

첫째, NFT 콘텐츠 데이터는 원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데이터로서 블록체인 외부의 저장매체인 오프체인(off-chain)에 저장된다. 오프체인의 종류로는 탈중앙화 분산형 파일 시스템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나 중앙 집중형 저장 매체인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등이 있다. 반면 온체인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로서 코인 전송이나 트랜잭션 등을 말한다. NFT 콘텐츠 데이터를 온체인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량 데이터는 블록체인 거래 지연 등의 사용성 불편을 일으키기에 대다수의 NFT 거래소들은 NFT 콘텐츠 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한다.

둘째, NFT 메타데이터는 NFT 콘텐츠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로서 작품 제목, 형태 및 크기 정보, 속성, 생성자 정보, 로열티 비율, 실제 NFT 콘텐츠 데이터의 원천 주소인 인터넷상의 위치를 포함한다. NFT 메타데이터도 IPFS나 중앙 집중형 저장 매체에 저장된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는 NFT 생성자가 별도로 ‘프리즈 메타데이터(Freeze Metadata)’ 기능을 실행해야 NFT 메타데이터를 IPFS에 저장할 수 있으며 오픈씨는 이를 ‘레이지 민팅(Lazy Minting)’ 시스템이라 일컫는다.⁶⁾

셋째,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스마트 계약으로 소유권 확인

4. 17.

3) Ante, Lennart, "The non-fungible token (NFT) market and its relationship with Bitcoin and Ethereum", 2021.

4) 권혁준, 임민수, 김협, "NFT의 거래 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한 고찰", 지급결제학회지, 13권1호, 2021, 258면.

5) 김승주,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50", 메이트북스, 2022, 98면.

6) 김민지, "NFT Art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 아트북프레스, 2022, 71면.

및 양도, 로열티 지급 등의 기능 및 NFT 메타데이터가 보관된 인터넷 주소가 코딩돼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상인 온체인(on-chain)에 저장되어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3. NFT의 유형

가. 가상자산형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투자자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이다. 현행법령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것이나 분산원장이라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는 가상자산이라 일컫지 않는다.⁷⁾ 그러나 NFT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기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단순하게 판단하면 NFT도 가상자산이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포인트 사업자 등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가상자산에 관한 예외 조항으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두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사목).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특정금융정보법 제1조).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만을 기준으로 하여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2월에 제출한 금융위원회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NFT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NFT의 유형은 ① 게임형 NFT, ② 결제수단형 NFT, ③ NFT 아트, ④ 실물형 NFT, ⑤ 증권형 NFT이며, 이 중 게임형 NFT와 결제수단형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NFT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이용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7) 전우정, “맑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71권3호, 2022, 227면.

NFT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NFT 발행량이 많고 실질적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소장품을 넘어 가상자산으로 규제받을 수 있다. 반면, NFT 아트는 투자성이나 결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디지털화한 실물형 NFT는 수집품에 가깝고 NFT를 진품 인증 및 소유권 이전의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에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증권형 NFT는 가상자산보다는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속성을 지닐 경우에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를 NFT의 유형을 판단하는데 일괄 적용하는 것은 다변화하며 성장 중인 초기 NFT 시장의 현 상황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 형태는 NFT 아트인데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게임형 NFT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제너러티브 아트 방식으로 각각 서로 다른 시각적 속성의 차이를 지닌 1만개의 NFT를 발행한 NFT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 작가의 아트 작품을 NFT 초기 생성의 모델로 도입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여러 속성의 층위를 조합해 무작위 생성하는 방식으로 NFT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NFT 아트의 경제적 가치인 최저가(low price)를 상승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운영팀에서 다양한 사업계획안을 실행해나가기에 하위테스트 기준에 의해 증권형 NFT로 분류될 수도 있다. 또한 탈중앙화금융인 디파이(DeFi)를 NFT 아트에 접목하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의 NFT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기에 NFT의 유형을 구분할 때 단일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각 NFT의 발행 형태와 실질 기능 및 활용처를 세세히 살피는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나. 증권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금융투자상품은 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 위해 ③ 계약서의 권리로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④ 투자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디지털자산인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등록제도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적용되는데,⁸⁾ 금융위원회에서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단독으로는 수집품의 기능이 전혀 없는 NFT로서 특정 자산을 다수의 사람이 분할 매수할 수 있도록 NFT화한 집합투자상품과 같은 성격을 가진 NFT를 의미할 것이다.⁹⁾

8) 전우정, “맑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71권3호, 2022, 215면.

9) 한국경제신문,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아니다"는 금융위의 입장, 무슨 의미일까? [한경 코알라], 2021. 12. 23.

한국금융연구원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기능적으로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형 NFT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달리 말하면 NFT에 ‘증권성’이 있을 경우 해당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집품이나 예술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실물형 NFT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권성’이 없으므로 투자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물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와는 달리,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에 관하여는 금융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¹⁰⁾ 이에 따르면 실물형 NFT 자체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 실물형 NFT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다. NFT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하위테스트(Howey Test)¹¹⁾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 실물형

실물형 NFT는 실제 유형물로 존재하는 미술품, 유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디지털 아트, 희귀품 등을 NFT로 발행한 것이다. 실물형 NFT는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기 어려우며, 해당 NFT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해당 NFT가 진정한 진품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한다. 유명 NFT 아티스트인 비플(Beeples)이나 뱅크시(Banksy)의 작품, 영국의 유명 화가인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자신의 그림을 NFT로 발행한 것,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2021년에 다빈치, 모네, 고흐, 칸딘스키 등 소장품 5개를 NFT로 발행한 것¹²⁾,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의 첫 트윗을 NFT로 발행한 것 등이 실물형 NFT에 포함될 수 있다.

실물형 NFT는 대부분 희소가치를 상품성으로 하며, 수집 및 소장품으로서 소비된다. 실물형 NFT는 예술품에 해당하는 NFT 아트와, 예술품은 아니지만 희소가치가 높은 NFT(가령 잭 도시의 첫 트윗)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예술품이 아니어도 희소성만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NFT가 다수 등장하면서 엄격한 의미의 ‘예술성’과 ‘희소성’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실물형 NFT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NFT 구매자가 갖는 권리의 성격인 것이다.

10) 법무법인 디라이트, NFT 증권성 인정 여부, 2022. 8. 19.

11) SEC v. Howey Co., 328 U.S. 293, 301 (1946).

12) 블록체인월드, 에르미타주 박물관, 바이낸스와 고흐·다빈치·모네 NFTs 경매, 2021. 8. 31.

라. 기타형

기타형 NFT는 NFT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이나 유형물 그 자체보다, NFT의 이용처나 목적이 더 중요시되는 것들로 분류해볼 수 있다. 가령 각종 프로젝트성 NFT,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활용되는 NFT, 메타버스 NFT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는 점은 기타형 NFT와 실물형 NFT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성 NFT 중 가장 유명한 것은 ‘BAYC(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이다. 세계 최대 NFT 행사를 주관하는 ‘NFT NYC’ 사무국은 2022년 6월 23일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씨와 공동으로 ‘NFT 2022 어워드’를 열었는데, 오픈씨에서 거래 내역, 행사 참가자 투표 등으로 분야별 NFT를 선정한 결과 BAYC가 가장 판매량이 많은 컬렉션, 가장 혁신적인 NFT 프로젝트, 최고 NFT 사업 모델 등 다섯개 부문에서 상을 받아 최다 부문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다.¹³⁾ ‘BAYC’ 외에 ‘더 메타콩즈’라는 국내의 NFT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는다. 메타콩즈는 다양한 고릴라 캐릭터를 앞세운 NFT로, 현대자동차, GS25 등 다양한 국내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13) 한국경제신문, 유망 NFT 1위는 BAYC, 2022. 6. 24.

Ⅲ. NFT 시장 및 거래 현황 조사

1. 국내 사업체

<표 1-1>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개요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비스트(주)	(주)아트토큰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사업 기간	설립시기	2012년 4월	2022년 3월	2021년 3월	2021년 8월	2018년 3월
	폐업시기	-	-	-	-	-
서비스 개시시기		2021년 11월	2021년 11월	2021년 4월(베타)	2022년 6월(베타)	2021년 12월
서비스 명칭		업비트NFT	메타갤럭시아	아트토큰 (ARTTOKEN)	에트나 (ETNAH)	클리프 드롭스 (Klip Drops)
직원수		약 4-500명	약 20-25명	18명	10명	약 114명
운영자금		정보 미제공	30억원	정보 미제공	정보 미제공	-
이용자수		정보 미제공	회원수의 3-5%	정보 미제공	1일 100명이상	-
회원수		900,000,000명	38,000~40,000명	정보 미제공	회원확보안함	200,000,000명
온라인 활성 사용자수		900,000,000명	38,000~40,000명	정보 미제공	1일 100명이상	200,000,000명
회사 수익 구조 홍보 / 업무 제휴	거래수수료	○	○	○	○	○
	아트상품 판매	×	×	○	×	×
	컨퍼런스	×	×	○	×	-
	전시공간	×	×	○	○	-
	업무제휴	○	○	○	○	○

<표 1-2>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운용 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베스트㈜	(주)아트토큰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사업 방식	거래 서비스	○	○	○	○	○
사업 운용 범위	1차 마켓 (Drops)	○	○	○	○	○
	2차 마켓 (Maketplace)	○	○	○	×	○
Drops 입찰 거래 수수료율		×	-	미정	15%	5%
Maketplace 거래 수수료율		2.5%	10%	2.5%예정	×	5%
거래후 7일 이후 환불(청약철회규정) 여부		×	×	×	×	×
고객대응 서비스 유무		○	○	○	○	○
해킹방어 시스템 유무		○	-	○	×	-

<표 1-3>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 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베스트㈜	(주)아트토큰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거래 결제 방식	암호화폐	○	○	○	○	○
	현금 (계좌이체)	×	○	×	×	○
	신용카드	×	×	×	×	○
	휴대폰 소액결제	×	×	×	×	○
암호화폐 플랫폼	Drops	이더(ETHE), 비트코인	이더(ETHE), 클레이(KLAY)	이더(ETHE)예 정	클레이(KLAY)	클레이(KLAY)
	Marketpalce	이더(ETHE)	이더(ETHE), 클레이(KLAY)	이더(ETHE)예 정	×	클레이(KLAY)

<표 1-4>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베스트 (주)	(주)아트토큰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NFT 발행자 대상	갤러리 (미술전문 업체)	○	○	○	×	정보미제공
	작가(크리 에이터 포함)	×	○	○	○	○
	일반인	×	○	×	×	×
거래 작가 국적	국내	○	○	○	○	○
	국외	○	○	×	○	○
거래 작가수		약 80명	정보미제공	4,000명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거래 장르		회화, 디자인, 일러스트, 영상, 게임, 스포츠, 디지털아트, K-pop 등	사진, 캐릭터 및 일러스트, 동양화 등	국외,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 작품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적인 작가뿐만 아니라 이머징 디지털 작품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서브컬처, 기획상품, 영화, 패션, 브랜드 등
거래이용 자 국적	국내	○	○	○	○	○
	국외	×	×	×	○	×

<표 1-5>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법·세제 관련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넥스트(주)	(주)아트토콘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저작권 계약 유무	○	○	○	○	○
추급권 유사 발생 여부	○	○	○	○	○
실명거래 인증 여부	○	○	○	x	○
특금법상에서 규정장치 여부	○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x	-
증여세 발생 여부	○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
부가세 발생 여부	○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
법인세 발생 여부	○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x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

2. 해외 사업체

<표 2-1>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개요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이어 (SuperRare)	니프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사업 기간	설립시기	2017년 12월	2021년 2월	2018년	2018년 4월	2018년	2021년 9월
	폐업시기	-	-	-		-	-
직원수		200명이상	51-200명	11-50명	51-200명	11-50명	51-200명
회사 수익 구조	거래수수료	○	○	○	○	○	○
	아트상품 판매	×	×	×	○	×	×
홍보 / 업무 제휴	컨퍼런스	○	○	○	×	×	×
	전시공간	×	×	×	×	×	○
	업무제휴	○	○	○	○	○	○

<표 2-2>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운용 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어 (SuperRare)	니프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사업 방식	거래 서비스	○	○	○	○	○	○
사업 운용 범위	1차 마켓 (Drops)	○	○	○	○	○	○
	2차 마켓 (Marketplace)	○	○	○	○	○	○
Drops 입찰 거래 수수료율		2.5%	15%	2.5%	15%	5%	×
Marketplace 거래 수수료율		2.5%	5%	2.5%	3%	5%	2%
거래후 7일 이후 환불(청약철회규정) 여부		×	×	×	×	×	×
고객대응 서비스 유무		○	○	○	×	×	×
해킹방어 시스템 유무		○	×	×	-	-	-

<표 2-3>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 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어 (SuperRare)	니프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거래 결제 방식	암호화폐	○	○	○	○	○	○
	현금 (계좌이체)	×	×	×	×	○	○
	신용카드	○	○	○	×	○	×
	휴대폰 소액결제	×	×	×	×	×	×
암호화폐 플랫폼	Drops	이더(ETHE) 매틱(MATIC) 클레이(KLAY) 솔(SOL)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솔(SOL)
	Marketpalce	이더(ETHE) 매틱(MATIC) 클레이(KLAY) 솔(SOL)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솔(SOL)

<표 2-4>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어 (SuperRare)	니프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NFT 발행자 대상	갤러리 (미술전문 업체)	○	×	×	-	-	-
	작가(크리 에이터 포함)	○	○	○	○	○	○
	일반인	○	×	×	-	×	×
거래 장르		땅(Land), 음악, 도메인 네임, 트레이딩 카드, 컬렉터블, 게임 아이템	사진, 영상, 모션그래픽 등	이미지, 비디오, 3D 모델, 360도 이미지	디지털아트	컬렉터블, 음악, 애니메이션 등	싸이키델릭 어나니머스, 프로버블리 닷넷, 퍼지 펭귄 등

<표 2-5>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법·세제 관련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어 (SuperRare)	니프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저작권 책임 유무	×	×	×	×	×	×
추급권 유사 발생 여부	○	○	○	○	○	○
실명거래 인증 여부	×	×	×	×	×	×
특금법상에서 규정장치 여부	-	-	-	-	-	-
증여세 발생 여부	×	-	-	-	-	-
부가세 발생 여부	×	-	-	-	-	-
법인세 발생 여부	×	-	-	-	-	-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	○	○	○	-	-

IV. NFT 아트의 저작권법적 쟁점

1. NFT의 소유권 인정 여부

NFT는 보통 콘텐츠의 거래 기록을 통해 원본을 ‘소유’ 함을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방식으로 인증하는 용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물건을 ‘소유’ 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상 원칙적으로 민법이 규율해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 앞서 우리 법체계상 콘텐츠는 무체물인 지적재산으로서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율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단순히 보면 하나의 대상에 대해 두 가지 영역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 물건을 ‘소유’ 한다는 것과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구분됨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술품, 즉, 콘텐츠에 관하여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11조)인 ‘소유권’과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이 주체를 달리하여 동시에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NFT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NFT를 현행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 제98조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¹⁴⁾ 고체, 액체, 기체 등이 그 예이다. 앞서 살펴본 전통적 형태의 거래에서 조각상의 경우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결국 NFT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다수설은 NFT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¹⁵⁾ 물건의 성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타적 지배가능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NFT는 이러한 성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¹⁶⁾

NFT의 물건성에 대해 아직 법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행법에서

14) 네이버 사전(표준국어대사전)상 ‘유체물(有體物)’의 정의.

15) 신봉근, 앞의 논문, 102면.

16) 윤종수·표시영,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법조 제70권 제6호, 2021, 230-231면. 그러나 이와 달리 NFT는 그 특성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고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디지털 토큰의 한계를 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독립하여 존속할 수 있는 것이며 ‘자연력’의 의미를 엄격하게 이해할 필요없다는 등의 근거로 NFT를 물건으로 인정하는 소수설도 있다.

NFT를 ‘물건’으로 인정하여 소유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¹⁷⁾ 결국 NFT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NFT에 있어서는 ‘소유권’이라는 개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¹⁸⁾ 다만 이 경우 이미 사실상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하는 상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NFT 거래가 법적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무엇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지는 것인 바,¹⁹⁾ 향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우선 현재의 상황에서는 NFT 아트 거래 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는 NFT 거래에 내포된 스마트 컨트랙트(계약)에 의해 발생한 계약상 채권에 대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물성

NFT 아트 콘텐츠가 커뮤니티를 통해 그 희소가치를 인정받거나 예술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행사 등을 할 수 없다.²⁰⁾ 다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NFT 아트 콘텐츠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NFT’의 경우 앞서 ‘물건’이나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2. 4. 20. 시행) 제2조 제1호의 ‘데이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²¹⁾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이러한 데이터를 부정 사용하는 특정 행위들을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만약 특정 NFT 아트 콘텐츠가 저작물로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17) 대법원도 최근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18) 따라서 이하에서 NFT 플랫폼에서 이를 구매한 사람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NFT 아트의 ‘소유자’라는 표현의 사용은 지양하고, ‘구매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19) 김병일,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KISO저널 44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 10면.

20)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합법성’이나 ‘윤리성’을 제시하지 않는 바,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일지라도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음란물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 10872 판결).

2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는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한다.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3. NFT 거래의 추급권 기능과 권리소진의 원칙

NFT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작품이 재판매되면 그때마다 NFT를 최초로 발행한 자에게 귀속되는 로열티 수익을 스마트 계약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른바 ‘추급권’에 따른 수익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²²⁾ ‘추급권(Droit de suite)’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없는 개념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인정되는 권리인데,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을 최초로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판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 비율 분배받을 권리로서 일종의 재판매 보상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²³⁾ 이러한 권리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음에도 NFT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먼저 채권적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추급권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NFT를 최초 발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비율은 NFT 플랫폼마다 대동소이한데, 오픈씨의 경우 창작자는 판매 가격에서 최대 10%까지 로열티를 설정한다.²⁴⁾

이러한 재판매 로열티 수령 구조는 저작권법상 배포권 행사 시 ‘권리소진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제한되도록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저작물이 한 번 적법하게 판매된 이후에 이를 중고 거래와 같은 형태로 재판매할 때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소진의 원칙’은 유체물에 한정되는 개념으로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상의 복제물과 같은 무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²⁵⁾ 그러나 NFT의 경우 NFT가 가지는 그 고유의 특성인 ‘대체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고유성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유체물의 소유권 이전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고,²⁶⁾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이라도 존재 형식이 달라지면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

22) 박정훈,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 저작권 동향 2022 제2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면.

23) 윤종수·표시영, 앞의 논문, 236면.

24) 박정훈, 앞의 논문, 2면.

25) 박정훈, “NFT를 통한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 저작권 동향 2022 제1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2면.

26) 윤영진,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유권 전쟁의 서막 - NFT가 I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과 법 제17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68면.

다는 견해도 있다.²⁷⁾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NFT가 재판매되면 대부분 그에 따라 해당 NFT 아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재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²⁸⁾

4.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침해 및 보호방안

가. 저작권 침해의 양태

1) 소유자 등 무권리자의 NFT 발행

NFT를 발행할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여 NFT를 발행하는 행위를 ‘페이크 민팅(Fake Minting)’이라고 한다. 창작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작가의 작품을 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NFT로 발행하여 버젓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기존 미술작품을 구매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NFT로 발행할 권리도 없는 것인데,²⁹⁾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페이크 민팅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NFT의 구매자도 피해자가 된다.

2) 위작 NFT와 표절 NFT

기존의 미술 시장 질서를 교란했던 ‘위작’ 행위는 NFT 아트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다른 기존 작품(전통적인 형태의 작품이나 다른 NFT 아트)을 비슷하게 따라하여 창작한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는 물론, 인증 목적으로 NFT 발행을 한 기존 작품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 위작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위작 NFT를 발행하는 행위는 권리관리정보³⁰⁾를 허위로 부가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104조의3 제1호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제136조 제2항) 또는 저작자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제137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벌될 수 있다.³¹⁾

27) 박경신, 앞의 논문, 34면.

28) 윤종수·표시영, 앞의 논문, 235-236면.

29) 만약 소유권을 양도 받으면서 저작권까지 함께 양도 받은 경우라면 NFT를 발행할 권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 ‘권리관리정보’는 ①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② 저작권등을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③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9호).

한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밝혀질 경우, 시장에 의해 해당 NFT 아트 콘텐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해당 NFT를 구매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저작권의 보호방안

1) 저작권 침해의 예방

저작권자는 NFT를 발행할 때 구매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며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특히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다시 말해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되는지 아니면 구매자에게 양도되는지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구매자는 ① NFT를 발행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② 구체적인 판매 대상의 정보, 특히 NFT 메타데이터에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③ 판매자가 게시한 사항과 플랫폼 약관에 따라 본인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나 이용허락의 범위, ④ 재판매 시 이용조건이 이전되는지 등의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저작권자(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직접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저작권자가 NFT 발행 업체(에이전시 등)에게 ‘독점적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에이전시가 저작권자를 대위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저작권자가 에이전시에게 ‘배타적 발행권’까지 설정해주었다면 해당 에이전시는 독자적으로 금지청구 등 권리 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31) 박경신, 앞의 논문, 23-25면.

V. NFT 아트의 플랫폼 관련 쟁점

1. NFT 플랫폼의 법적 지위³²⁾

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NFT 플랫폼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및 각종 자금세탁방지의무, 실명계정 확보의무등을 부담하게 되며, 위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NFT 플랫폼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는 개별적인 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NFT 플랫폼이 단순히 NFT의 매수·매도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NFT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에서 제외될 수 있다.³³⁾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NFT는 증권성이 없는 ‘NFT 아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NFT 아트의 거래를 중개하는 NFT 플랫폼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해당성

NFT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여 NFT 플랫폼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인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되고(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이후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경영 유지의무 및 각종 행위규칙 준수 의무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NFT는 증권성이 없는 ‘NFT 아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NFT 아트의 거래를 중개하는 NFT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성

NFT 아트의 거래를 중개하는 NFT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NFT 플랫폼은 그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전자

32) 본 절의 논의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NFT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33) 법무법인 화우, “NFT 관련 법적 쟁점”, 법률신문, 2022. 3. 18.

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NFT 플랫폼이 NFT의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로부터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 제1호 가목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NFT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행이 완료된 NFT 거래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NFT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

가. NFT 플랫폼의 계약상 책임

NFT 아트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NFT 플랫폼을 이용하여 NFT 아트를 거래하게 된다. 이용자는 NFT 플랫폼이 마련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절차를 거쳐 NFT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NFT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등은 해당 플랫폼의 약관의 내용에 의하여 규율되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NFT 플랫폼의 약관은 NFT 플랫폼이 다수의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되, 이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이 적용된다.

약관규제법은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라는 3단계 통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해석통제와 내용통제이다. 약관의 해석통제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약해석원칙에 더해 약관규제법상의 특수한 해석원칙에 따라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게 되는데,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해석원칙으로는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둘째,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셋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넷째,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존재한다³⁴⁾

NFT 아트는 주로 ‘오픈씨(OpenSea)’와 같이 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외 NFT 플랫폼에서 다수 거래되고 있는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관에 유사하게, 고객에 의한 변경가능성 없이 수용 또는 거부(take it or leave it)의 선택만 가능한 경우를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부합계약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① 표준서식서면의 사용(the use of standard form documents), ② 수용 또는 거부만으로 수요의사 표출(the presentation of demands on a

34) 이병준, “해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한국소비자원, 2012, 189면.

take-it-or-leave-it basis)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으로 여겨진다.³⁵⁾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이 계약법상의 법리³⁶⁾를 사용하여 약관의 내용통제를 하거나 약관의 해석에 작성자 불리의 원칙 등의 적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에 의존하고 사법적 심사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 어떠한 약관의 내용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³⁷⁾

나. NFT 플랫폼의 불법행위 책임 및 형사책임

NFT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맺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와 NFT 플랫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관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 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갤러리인 데비안아트가 “지금까지 NFT 시장에서 29만 건 이상의 무단 도용과 표절 행위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할 만큼,³⁸⁾ NFT 플랫폼에서는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NFT 플랫폼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특정 NFT 플랫폼을 통해 제3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 NFT 플랫폼은 제3자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자와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디다스 사건’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며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35) 박설아, “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41~42면.

36) 미국에서의 계약 해석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2차 계약법 리스테인먼트를 참고할 수 있는데, 특히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성의 기준’이 주요하며, 리스테인먼트 제206조의 작성자 불리의 원칙 또한 주로 약관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리스테인먼트 제211조에서는 표준계약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어 그 해석에 합리성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박설아, 위의 논문, 106면).

37) 박설아, 위의 논문, 73면.

38) The New York Times, Thefts, Fraud and Lawsuits at the World’s Biggest NFT Marketplace, 2022. 6. 6.; 연합뉴스, 해킹·사기·도용 범람하는 미국 NFT 시장…거래소는 ‘모르쇠’, 2022. 6. 7.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 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이 실시하는 법리에 따르면 ① 권리 침해 NFT의 불법성의 명백하고, ② NFT 플랫폼이 권리자로부터 권리 침해 NFT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았거나 권리 침해 NFT의 존재를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었으며, ③ 기술적, 경제적으로 권리 침해 NFT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다면, NFT 플랫폼은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NFT를 발행 또는 판매하는 자(직접 침해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NFT 플랫폼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방조죄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죄의 경우 대부분 양벌규정이 존재하는바(가령 저작권법 제 141조, 상표법 제235조), 방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NFT 플랫폼도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 국외 NFT 플랫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국외 NFT 플랫폼을 통해 NFT를 구매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NFT 구매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국외 NFT 플랫폼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NFT의 적법성과 진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외 NFT 플랫폼들은 이용약관에서 ① 플랫폼은 NFT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② 구매자가 NFT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NFT의 적법성 및 진위성 등을 확인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③ 플랫폼은 판매되는 NFT의 적법성과 진위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을 두고 있다. 오픈씨와 같은 국외 NFT 플랫폼은 정당한 권리자(가령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으면 불법 NFT를 바로 삭제할 뿐이며, 불법 NFT를 구매한 구매자에게 매매대금 환불이나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³⁹⁾ 구매자의 입장에서 판매자 및 판매되는 NFT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선 NFT 판매자의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채널 등을 통해 판매자와 NFT 컬렉션 및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프로젝트의 이력, 거래 내역, NFT 메타데이터, 지갑 기록 등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판매자의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⁴⁰⁾

판매자의 신뢰도, NFT의 적법성과 진위성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NFT 구매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전시권’(rights to display)과 같은 법적 용어의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대상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한정되나, 미국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대상은 건축저작물과 음반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이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전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 및 NFT와 관련하여 사전에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NFT를 구매하였음에도 불법 NFT였음이 사후에 드러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매자는 자신이 보유한 NFT가 삭제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구매자는 1차적으로 불법 NFT를 판매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2차적으로 불법 NFT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외 NFT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국내 구매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구매자와 국외 NFT 플랫폼 사이에 체결된 이용 계약(이용약관)은 국제사법 제42조의 소비자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NFT 플랫폼이 국외법원에 전속관할을 부여하는 약관 조항을 두었더라도, 국내 구매자는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외 NFT 플랫폼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에 따라 국외 NFT 플랫폼의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 NFT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광범위한 면책조항들은 불공정 약관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외 NFT 플랫폼에 불법 NFT 관리와 관련하여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내 구매자는 국내 법원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9) 서울경제, 450만원 주고 산 NFT, 알고보니 '짜퐁'...삭제 후에도 오픈씨는 '모르쇠', 2022. 1. 14.

40) 오픈씨의 경우 특정 NFT 컬렉션이나 프로젝트에 파랑색 인증 마크(Verified Collection)를 부여하는데, 오픈씨에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당 인증 시스템의 목표를 “오픈씨에서 사칭과 위조 작품의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오픈씨로부터 인증을 부여받은 NFT 컬렉션은 제작자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구매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다.

VI. NFT 아트의 과세 쟁점

1. NFT의 유형과 과세 쟁점 개관

가. NFT의 유형

NFT(Non Fungible Tokens, 대체불가토큰)는 작품과 구매자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암호화 기술이나 그 결과물을 말한다. NFT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매개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결과물로 보는 경우 NFT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과세 여부, 과세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NFT 과세 쟁점은 종전 전통적인 과세 체계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NFT 과세에 대하여 종전과 특이한 과세 쟁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NFT를 가상자산과 동일한 것과 다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NFT를 가상자산의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이 가상자산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NFT가 가상자산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이 아닌 NFT가 증권형, 실물형, 기타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결국 NFT를 가상자산형, 증권형, 실물형, 기타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나. NFT 유형별 과세

앞에서 살펴본 NFT 아트의 유형별로 NFT 아트의 과세 쟁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다만, 특정의 NFT 아트에 대하여 위 유형별 중 여러 가지 성질이 혼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막상 과세 단계에서 세법적인 판단이 일도양단식으로 쉽게 내려지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1) 가상자산형

가상자산형의 경우, 그동안 세법상 과세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러

한 논란 끝에 과세당국에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되었고,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상화폐 등과 같이 일반적 가상자산 과세와 같이 취급한다.

2) 증권형

증권형의 경우 이를 주식, 회사채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주식, 회사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 과세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권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유가증권으로 보는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NFT가 증권형의 성격을 갖더라도 실제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엔화스왑이라는 금융상품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소득세 과세 체계하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과세 근거를 마련한 입법적 보완이 있었다. 결국 사업소득의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형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해석론이 아닌 입법론의 문제일 수 있다.

3) 실물형

실물형의 경우에는 특히 미술품 자체나 미술품과 유사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NFT아트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들은 실물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NFT가 아닌 일반 미술품에 대한 과세 문제를 NFT 아트에도 그대로 적용할지가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4) 기타형

기타형의 경우에는 가상자산형, 증권형, 실물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의 분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기타형 자체에 대하여 자산성이 인정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이다.

2. NFT 아트의 유형별 과세 검토

가. 가상자산형

NFT가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 끝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로 입법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볼 것인지(가상화폐로 지칭), 자산으로 볼 것인지 그 법적 성격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후자로 입법적 해결되었다.

1)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

한편 당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하기로 했으나 2021년 12월 여야는 과세 인프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미비를 이유로 과세를 1년 유예시켰다. 2023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으로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타소득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사업소득으로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을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이 등장한 세원(稅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하든 적법하든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규정이 없었더라도 소득세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소득의 사업 분류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과세는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과세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가 될 것이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의 세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에 따른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총수입금액은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를 말한다.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도 포함된다. 가상자산 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으로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은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에 따른다. 기본공제(과세최저한)는 연 250만원이다.⁴¹⁾ 세율은 20%이다. 이러한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의

41) 주식과 유사성을 강조하여 5000만원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소득세법 64조의3 2항을 개정해 가상자산 소득에도 5000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3억원 이하의 투자소득에는 20%, 3억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이 제시된다 있다.

세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2) 가상자산 관련 상속세, 증여세 관련 평가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시행은 2023년부터)이 소득세법상 마련되어 비교적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고, 소득세가 아니라도 상속,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증여세가 그 이전이라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법 평가 규정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 12. 28. 고시한 바 있다.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이다.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1. 12. 31. 이전 가상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법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한다.

나. 증권형

NFT 중 그 법적 성격을 증권으로 보는 경우 증권에 대한 세제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증권형 NFT는 사업 내용에 따른 손익 분배의 계약상 권리를 담은 것으로 이를 증권의 속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71349/> (2022. 9. 19. 방문)

이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감독 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증권 자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서 가상자산형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 소득에 대해 소개했지만, 가상자산의 경우도 금융상품과 차별을 둔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증권형 NFT는 더욱이 금융투자소득과 관련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투자소득과 차별화하여 과세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 상장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기본 공제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③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을 다른 금융투자손익 등과 통산(通算)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④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금융투자결손금과 마찬가지로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등 다툼이 있는데, 증권형 NFT는 위 쟁점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쪽에 가깝다면 확실히 가상자산과 과세상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증권형 NFT의 경우 그 법적 근거만 명확하다면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고, 기본공제는 5천만원, 그 거래로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을 다른 금융투자손익 등과 통산할 수 있고, 그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NFT 가격의 등락을 생각한다면 이익만이 아니라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형 NFT의 경우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과세 중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 및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은 이익은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에 반해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소득⁴²⁾이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자의 과세를 달리 취급하는 전통적인 세제에서는 주식인지, 채권인지가 과세상 중요한 문제이다. 그 시행 시기가 2023년이 될지가 불투명하게 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주식, 채권의 구별에 따른 과세상 차이는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증권형 NFT라 할 때 가상자산형 NFT와는 다른 과세 문제가 생기는 또 다른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증권형으로 볼 때 종전의 금융상품 어느 것으로 볼지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증권형 NFT의 과세 문제는 이처럼 증권형 NFT라는 새로운 자산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독특한 과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종전의 유가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를 정

42)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이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에 대한 사항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제는 이러한 복잡한 금융상품의 차이를 줄이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이라 할 수 있다.

다. 실물형

실물형 NFT는 그것이 디지털 예술 작품이나 실물에 대한 NFT로서 취급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NFT가 디지털 예술 작품 그 자체이거나 이와 관련된 NFT라 할 때 기본적으로 종전 예술 작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을 매긴다. 미술품은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경비율이 80%이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진다. 그리고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비과세다. 소득세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 미술품에는 조각은 빠져 있어 조각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을 열거하고 있다.

실물형 NFT의 경우 이러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실물형 NFT를 예술 작품 자체로 보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못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5호에서는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성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성에 대하여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 과세가 됨을 밝히고 있는데, 실물형 NFT를 이 중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성”으로 본다면 이 역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창작성에 실물형 NFT 자체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만,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한다는 점에서 실물형 NFT를 어디로 편입시킬지에 따라 필요경비의 계산이 달라진다.

라. 기타형

NFT는 다양한 형태로 발급 및 유통이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형, 증권형, 실물형 이외에 정형화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소득세 체계가 열거된 것이 아니라면 과세하지 못하는 소득원천설에 의한 입장에 따른다면, 그러한 새로운 형태가 사업소득으로 포섭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세금이라는 것이 이익이 생기는 경우만이 아니고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 NFT에 대한 비용이나 투자손실을 세제상 고려를 받기 위해서는 ‘이익이 있을 때 과세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⁴³⁾ 그리고 NFT를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가상자산과는 다른 NFT라면 시가 원칙에 따라 과세될 것이고 이 경우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게임과 관련된 NFT의 경우처럼 NFT를 활용해 게임 설계와 제작에 참여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 문제, 필요경비의 인정 문제, 원천징수의 문제 등 과세상 검토할 문제가 실무상 문제될 수 있다.

43) 자문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판매)를 위해 가상자산 채굴에 필요한 전산장비, 환풍기 등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과세자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 또는 판매)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2021.03.08.)).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VII. NFT와 ESG 관련 생점

1. NFT와 환경

NFT는 대부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더리움은 그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작업증명(PoW)’ 방식을 사용해왔다.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이란 목표값 이하의 해시를 찾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해당 작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인데, 보통 채굴(mining)을 통해 작업증명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전력 소모가 발생한다.⁴⁴⁾ 또한 이더리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블록체인에 해당 거래를 기록하게 되므로 NFT가 생성되고 거래될 때마다 상당한 전력 소모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배출도 증가하게 된다.

2. 블록체인 및 NFT 업계에 부는 親ESG 바람

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22년 9월 15일, 이더리움 2.0 더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더리움의 블록 검증 방식은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로 전환되었다.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이란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⁴⁵⁾ 지분증명 방식의 경우 작업증명 방식보다 전력소모가 급감한다는 환경친화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디크립트(Decrypt)는 지난 9월 15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마친 이더리움의 탄소 배출량이 이전 대비 99.9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디크립트의 보도는 가상화폐 탄소 배출량 조사기관인 ‘크립토카본 레이팅 인스티튜트(CCRI, 이하 연구소)’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연구소는 기존 시간당 2,300만 메가와트(MW) 수준이었던 이더리움의 전력 소비량이 업

44) 해시넷, ‘작업증명’, <http://wiki.hash.kr/index.php/%EC%9E%91%EC%97%85%EC%A6%9D%EB%AA%85>, (2022. 9. 19. 방문).

45) 해시넷, ‘지분증명’, <http://wiki.hash.kr/index.php/%EC%A7%80%EB%B6%84%EC%A6%9D%EB%AA%85>, (2022. 9. 19. 방문).

그레이드 이후 2,600 메가와트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의 이번 결과는 당초 예상치였던 99.95%를 웃도는 결과로 파악됐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후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어 따라 이더리움의 연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역시 기존 1,100만 톤에서 870톤으로 감소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⁴⁶⁾

위와 같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 지분증명(PoS) 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전력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이 급감함에 따라 NFT의 발행과 거래 시 소모되는 전력과 탄소 배출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는 NFT가 ESG 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나. NFT 플랫폼과 프로젝트들의 ESG 가치 제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상화폐·NFT 플랫폼들과 다수의 개별 NFT 프로젝트들이 친환경적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NFT가 ESG 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시선이 모이고 있다.

가령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크립토닷컴은, 크립토닷컴 앱과 거래소, NFT 마켓, 디파이(DeFi), 크립토닷컴 체인(Crypto.com Chain) 등 모든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고 또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하겠다고 탄소 네거티브의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바하마의 산호초 보존과 같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NFT 플랫폼 메타굿(Metagood)의 경우, 첨단 프로세스를 활용해 단일 거래에서 수천 개의 NFT를 생성함으로써 연산 부담을 줄이고, 자선단체들이 지불할 이더리움 가스비(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나아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 니프티게이트웨이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량에 준하는 탄소 상쇄권(carbon offsets)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⁴⁷⁾

일부 환경단체들은 NFT를 활용해 멸종 위기종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영국 지부는 지난 2월 ‘자연을 위한 토큰(Tokens For Nature)’이란 이름의 NFT를 공개했다. 판매 수익금은 멸종 위기종 동물과 서식지 보호에 쓰인다. 남아공 야생동물 스트리밍 채널인 ‘와일드어스(WildEarth)’는 보호구역의 표범·사자·하이에나 25마리를 NFT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판매 수익의 40%는 이들 동물의 서식지 관리인에 전달된다. 브라질 기업 네무스(Nemus)

46) 경향게임스,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99.99% 탈탄소화 성공, 2022. 9. 16.

47) 토크포스트, 니프티, NFT 환경 문제에 '탄소상쇄권 매입'으로 대응, 2021. 3. 30.

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열대우림을 지키고 있는데,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 4만1000헥타르(ha)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NFT 판매 수익금으로 소유지를 추가하고, 지역 원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⁴⁸⁾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NFT를 발행할 계획인데, 두나무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루니버스’는 권한증명(PoA·Proof of Authority) 기술을 사용해 채굴 과정 없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서 전력 소모 및 탄소 배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4년까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두나무는, 최근 디지털 아트 전시회 ‘8K Big Picture in FOR: REST전(이하 포레스트 전)’에 출품한 작품을 NFT로 발행한 뒤, 판매 수익금 일부와 수수료 전액을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작은 숲 조성’에 기부하기도 하였다.⁴⁹⁾ 지난 5월 17일에는 멀티체인 기반 아트 콜렉터블 NFT 전문 기업 ‘트레저스클럽’과 AI 기반의 ICT 리사이클 기술 기업 ‘민잇’이 국내 최초 ESG 가치를 담은 멤버십 NFT 발행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는데, 트레저스클럽이 민잇과 함께 발행하게 될 멤버십 NFT는 기존 민잇의 친환경·사회공헌 활동 및 서비스와 결합한 형태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ESG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⁵⁰⁾

3. NFT와 탈중앙화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은 기존 기업의 불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탈중앙화 금융을 의미하는 DeFi(Decentralized Finance) 및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의미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등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요소는 ESG의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Ark Invest)의 CEO 캐시 우드(Cathie Wood)는 자발적인 참여와 보상을 전제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블록체인은 ESG 경영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⁵¹⁾

특히 DAO의 경우 자금조달, 투자 등의 모든 활동을 중개 기관 없이 가능하게 하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진행하며 공동으로 투자

48) 테크42,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NFT, 그런데 환경을 파괴한다고?, 2022. 4. 20.

49) 비즈니스워치, 숲 전시품 NFT 발행·수익금 녹지조성 '두나무의 ESG 경영', 2022. 6. 27.

50) MBN뉴스, 트레저스클럽, ESG 가치 담은 NFT로 협력사 글로벌 진출 지원 사격, 2022. 5. 17.

51)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커넥팅랩] ESG경영에 최적화된 기반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2022. 9. 2.

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형태의 조직으로, (1) 중앙관리자 없이 개인들이 공통 목적을 가지고 모여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유동적인 온라인 공동체로 계층구조가 없다는 점, (2) 자체적인 토큰을 발행하여 구성원들에게 의결권을 배부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투표를 통해 의사 결정보다 수평적인 조직구조, 익명성, 투명성을 가진다는 점, (3) 국경 없이 대규모의 자금을 모집하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4) 구성원은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DAO의 자체 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⁵²⁾ 전통적인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NFT가 가리키는 디지털 콘텐츠나 메타데이터가 블록체인 밖인 오프체인에 저장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중앙화’의 우려 이외에, NFT 시장이 판매 측면에서도 중앙화되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댄레이더(DappRadar) 자료에 따르면, 전체 NFT 판매량의 상당 부분은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가 지원하는 오픈씨(OpenSea)와 룩스레이어(LooksRare)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룩스레이어 상의 판매 대부분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토큰 리워드 프로그램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트레이더들이 보유한 NFT를 스스로 사고파는 가장 매매(wash trades)이므로, 실제 NFT 거래는 대부분 오픈씨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NFT 시장에서 콘텐츠 측면에서도 일종의 2차 중앙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⁵³⁾

52) 하온누리,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의 현황과 이슈”, 자본시장연구원, 2022, 1면.

53) 코인데스크코리아, NFT 시장은 갈수록 독점으로 가고 있다, 2022. 3. 22.

VIII. 결론

1. 본 연구의 성과

NFT미술시장의 기초 조사 및 제도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NFT 아트의 정의 및 유형 등에 대한 기초 연구
- NFT 아트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 조사 및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
- NFT 아트의 저작권법, 세법, 플랫폼, ESG 관련 쟁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 NFT 아트 종사자들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2. 본 연구의 기대효과

가. NFT의 정의, 유형 및 가상자산 해당성

NFT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입법이 우리나라에서 미비한 상태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는 경우, NFT 발행인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NFT와 관련하여 영업으로 거래 또는 이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특정금융정보법령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업, 보관·관리, 발행인에 대한 인가·등록 등의 진입규제를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시세조종행위금지, 예치 의무(피해보상계약), 손해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NFT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없고,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만약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NFT 발행인은 모집금액 및 대상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NFT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성

NFT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을 보이며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나 성격이 정립되지 않았고 기존 금융거래체계

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NFT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 화할 수도 있고 새롭게 디지털 자산을 창조함으로써 그 가치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NFT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NFT가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3호),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 기존 법률에 의하여 이미 규율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항목들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한다. 금융위는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3. 향후 전개 방향

2022년 하반기, NFT 시장은 FTX 사태라는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크립토겨울인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다. NFT는 시장의 유동성과 실제 사용성인 유틸리티를 대중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특정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에서 활용 가능한 NFT가 또 다른 독자적인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생태계로 이동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끔 하는 상호운용성은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 예컨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NFT는 솔라나나 클레이튼과 같은 여타의 블록체인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향후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체인 NFT가 출시되면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NFT를 거래하기 위한 멀티체인 기술 또한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렇듯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발전·적용되고 있는 NFT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국민체감형 NFT 실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사업 확대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NFT를 주요 미디어를 통해 불안정한 투기 혹은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도 NFT의 다양한 특성과 이용 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를 해두었듯 NFT라는 범주 안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 자산 지갑을 설치하고 해킹 및 스캠 방지 방안을 이해하며 메타버스 공간에 자신의 NFT를 전시하는 등 실전 워크숍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NFT와 같은 신기술은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도 빠르고 용어와 방식 자체가 생소한 면이 있어 실제

경험을 통한 이해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NFT 기술의 미래 가치에 대한 연구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다.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락과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블록체인 기술인 NFT는 향후 메타버스에서 디지털자산의 지식재산권을 입증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간 시장의 악재와 뉴스에 요동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NFT 기술의 미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기술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필요한 법령 및 법적 가이드라인, 향후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예술 시장 관계자들을 위한 NFT 아트 전시 및 교육 지원사업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내 주요 미술관 관계자 및 예술 시장 종사자들은 NFT 아트에 대한 실전적 경험 및 전반적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자문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국내 NFT 아트 시장은 기존 예술 시장과 괴리된 상태에서 성장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선을 국외로 돌려보면 최근 열린 마이애미 아트바젤에서 웹3.0과 NFT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등 신기술과 만난 예술 시장을 선점하고 포용하려는 혁신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세계 미술시장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NFT 아트를 현행 미술 관계자 및 전문가들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NFT 아트 거래 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저작권법적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NFT 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저작권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데이터의 물건성과 관련한 전통적인 민법 쟁점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국제사법, 약관규제법, 세법 등 쟁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아우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입법 방향을 더 살펴보자면, NFT가 상이한 성격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려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NFT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영역을 개척하고, 메타버스, 게임, 예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NFT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 시세 조종, 사기 범죄 등 불법행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지정할 것인지, NFT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상이해지므로 FATF의 권고에서와 같이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